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엄셋별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584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4. 8. 22.

발 의 자 : 엄셋별 의원

찬 성 자 : 고성미 의원

## 1. 제안이유

금주구역 내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유지에 힘쓰고,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 오남용이 의심되는 환자 발견 시 해당 기관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음주청정지역 용어를 금주구역으로 수정하여 금주에 대한 경각심 제고(안 제2조, 제3조, 제10조).
- 금주구역 지정에 필요한 내용 신설(안 제3조).
-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재활 지원 연계 신설(안 제9조).
-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항 신설(안 제12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

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, 제8조의4, 제34조제3항제1호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10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기 타

1) 현행 조례 : 별도 첨부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도 첨부

3) 입법예고 : 2024. 8. 23. ~ 8. 30.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“음주청정지역”이란”을 ““금주구역”이란”으로, “지역을”을 “구역을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음주청정지역 지정 등)”을 “(금주구역 지정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음주청정지역”을 각각 “금주구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중 “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”를 “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라 안내표지를”로 하고,

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구청장은”을 “누구든지”로, “음주청정지역의”를 “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되며, 구청장은 그”로, “기본계획을 수립하고”를 “계획을 수립하고,”로 하며,

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.

⑥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.

제5조제2항 중 “개최되는”을 “개최하는”으로 한다.

제9조,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0조, 제11조 및 제13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알코올 의존 치료 및 연계) 구청장은 음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발견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중전의 제9조)제1항 중 “음주청정지역”을 “금주구역”으로 한다.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과태료 부과·징수) ① 구청장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3. “<u>음주청정지역</u>”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와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<u>지역</u>을 말한다.</p> <p>4. (생 략)</p> <p>제3조(<u>음주청정지역 지정 등</u>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기초질서가 확립되고 쾌적하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나 일부를 <u>음주청정지역</u>으로 지정하거나 변경·추가할 수 있고,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② 구청장은 <u>음주청정지역</u>을 지정한 경우 <u>이를 알리는 안내판</u>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<u>금주구역</u>”이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역</u>을 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<u>금주구역 지정 등</u>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금주구역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금주구역</u>----- ----- 「<u>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</u>」 제5조에 따라 <u>안내표</u></p>

야 한다.

<신 설>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내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5조(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) ① (생략)  
② 구청장은 구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,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가 무상 제

지를 --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⑤ 누구든지 ----- --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되며, 구청장은 그 ----- 계획을 수립하고, -----.

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.

⑥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.

제5조(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  
② -----  
----- 개최하는 -----  
-----



제11조 (생 략)

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는 「질서 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제13조 (현행 제11조와 같음)

# 현행조례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[시행 2023. 10. 12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80호, 2023. 10. 12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·신체적·사회적·경제적 피해에서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건전한 음주문화”란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.
2. “절주(節酒)”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·신체적·사회적·경제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.
3. “음주청정지역”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와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.
4. “청소년 클린판매점”이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구매자·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.

제3조(음주청정지역 지정 등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기초질서가 확립되고 쾌적하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나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·추가할 수 있고,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0.12.>

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
  2. 학교정화구역(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)
  3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
  4.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
  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-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- ④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내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.

제4조(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) 구청장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.

제5조(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)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·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·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구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,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가 무상 제공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6조(금주·절주교육 및 절주활동 지원)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주 및 절주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주민들의 절주와 음주예방을 위한 교육관·홍보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,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관·홍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음주문화환경 조성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을 하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공청회 등)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구청장은 공청회,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관련 자원봉사자(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)로 위촉하여 음주정지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사업과 절주사업에 공헌이 많은 주민,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.

제10조(예산지원 등)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고, 홍보물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(제614호, 2010.05.12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1380호, 2023.10.12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

## □ 국민건강증진법

[시행 2024. 7. 10.] [법률 제19958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**제8조의4(금주구역 지정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2. 29.]

**제34조(과태료)**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설 2010. 5. 27., 2016. 3. 2., 2017. 12. 30., 2020. 12. 29.>

1.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

## □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[시행 2021. 1. 1.] [법률 제17758호, 2020. 12. 29., 타법개정]

**제20조(이의제기)**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.

## □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 4. 20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38호, 2022. 4. 20., 일부개정]

**제4조(지역계획의 수립 등)**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정신질환의 예방, 상담, 조기발견,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
2. 아동, 청소년, 중·장년,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
3.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
4.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이용 연계
5.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,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
6.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
7.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, 주거,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
8.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
9.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
10. 정신질환자의 건강, 취업,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
11.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·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
12.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13.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·시설·단체 등은 자료의 제공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**제5조(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)**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, 정신질환의 예방,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·상담·진료·사회복귀훈련 등과 관련된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을 기획·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본인이 동의한 구민을 대상으로 검진기관에서 정신건강검진·상담을 받도록 할 수 있다.

**제6조(검진비 등 지원)**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·상담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·상담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제4항에 따라 입원하게 된 자, 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자가 치료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를 위하여 치료와 관련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2.4.20.>

**제7조(복지서비스의 제공)**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,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와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활동 등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10조(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사업)**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적절한 관리를 통한 만성화 방지 및 회복 촉진 도모
2. 아동, 청소년, 중·장년,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
3.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
4.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
5.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상담, 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 운영
6.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면담 또는 사례관리
7.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지역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상담 및 연계
8.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## □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[별표 1의3] <개정 2021. 12. 3.>

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방법(제3조 관련)

### 1. 안내표지 부착 위치

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는 표지판이나 스티커의 형태로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, 벽면, 보도, 출입구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.

### 2. 안내표지 내용

가. 안내표지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
#### 1) 금주를 상징하는 그림이나 문자

(예시 1)	(예시 2)	(예시 3)
		